

2021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체인지업
자주 묻는 질문 - 저작권 편

2021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체인지업

자주 묻는 질문 - **저작권** 편

Contents

제 1장. 들어가기

1.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소개	6
2.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소개	7

제 2장. 저작권 FAQ

1. 저작권과 저작권자	10
2. 저작권 이용	12
3. 수익배분	15
4. 기타	17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인 박종관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artchangeup@arko.or.kr
홈페이지 artson.arko.or.kr
디자인 (주) 프럼에이

- 본 저작물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체결한 「예술인 저작권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제공된 저작권 상담 내용을 발췌 및 편집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은 상담자별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의견이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기+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1장.
들어가기**



1. 새로운 비대면 온라인 예술콘텐츠의 시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하는 2021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오프라인에서 확장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온라인 예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진입 단계의 예술인·단체를 위한 지원유형을 신설했습니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온라인 예술콘텐츠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누리집을 통한 콘텐츠 공개 등 지속적 확산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예술 활동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더욱 확장된 예술 콘텐츠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을 위한 첫걸음,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함께 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A부터 Z까지’는 이제 막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기획부터 수익화까지 예술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소개한 강연과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하는 저작권 활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온라인 예술콘텐츠 분야와 저작권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예술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하는 컨설팅’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하는 법률상담’에서 많이 나왔고, 공통적으로 예술인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온라인 예술콘텐츠 분야에 입문한 예술인들은 콘텐츠의 다변화로 인해 겪는 새로운 기술적인 요구와 협업의 필요성, 예산 마련과 홍보 및 수익화에 관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술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협업이 많아지는 분야인 만큼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된 권리,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계약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과 법률 지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올해 진행한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러한 질문에 답하며 맞춤형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자료의 정보들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2장.
자주 묻는 '저작권' 질문



1. 저작권과 저작권자

Q1.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가 뭔가요?

A. ‘결합저작물’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파트 A부터 파트 B는 누가 만들었고, C부터 D를 다른 이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분리할 수 있고,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서로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되더라도 독립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은 대본과 음악은 분리가 되고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협업을 통해 제작한 캐릭터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캐릭터의 원안을 제작한 후 채색하여 디자이너에게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해당 질문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정도만 제공하고 제작을 의뢰하였다면 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안이 구체적인 창작성이 발휘된 결과물이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가 나름의 창작성을 추가하였다면, 디자이너는 공동저작자 또는 2차적저작물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별도의 창작성을 발휘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캐릭터를 제작하였다면 원안 제작자가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Q3. 단체 소속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A. 기본적으로 직접 창작을 한 개인이 저작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의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기획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로써 제작하였고,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가 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제작하였거나,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이라도 업무로써 제작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개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들이 불명확하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Q4. 레퍼런스, 이야기와 콘티를 3D 애니메이터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우선 저작물성은 해당 결과물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명확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동저작물인지 2차적 저작물인지 달라지는데, 가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다른 사람이 그린 경우, 머리 따로, 몸 따로 분리하여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다면 공동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자가 애니메이션 구현 작업에 함께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3D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신 분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용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합의 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

Q5. 채색까지 한 시안을 제공하고 캐릭터를 디자이너에게 의뢰했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해당 질문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창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시안 그대로 제작하였다면, 의뢰하신 분이 단독 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시안에 창작성을 가미하였다면 디자이너는 공동저작자 또는 2차적저작물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문만 하고 실제 제작을 디자이너가 했다고 하면 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대해 모호한 부분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저작권 이용

Q6.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자가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에기에 등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는 경우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등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7.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음악이 교과서에 악보로 실려있습니다. 해당 악보로 연주하고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곡의 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해 연주하고 이를 촬영하여 개인만 소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한 영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공연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Q8. 거리공연에서 연주할 때도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A.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 제삼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도 통상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직접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공연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리성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입장료, 공연료, 후원, 지원 등을 받아서는 안 되고, 물품 판매를 위해 이용하거나 홍보를 위한 이용 등도 안 됩니다.

Q9. 구매한 악보를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해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저작자에게 이용 허락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악보를 구매한 것과는 별개로 연주를 촬영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음악의 저작권자들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음악의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해당 신탁관리단체에 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Q10. 외국곡의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 외국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곡의 경우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국내 신탁관리단체가 다른 외국의 권리자단체와 상호관리 협약을 맺어 관리하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우선 관련 국내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셔서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호관리가 되지 않은 곡의 경우에는 외국 권리자단체나 저작권자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Q11. 국내에 출판된 해외 문학 작품의 일부를 영리인 공연에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출처를 표기하면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출처를 표기했다 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번역본을 사용하실 경우, 문학 작품의 원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하신 분에게도 별도의 이용 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로 문의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 측이 권리자와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대신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면, 해당 출판사 측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사가 출판에 관해서만 허락을 얻은 것이라면 직접 해외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Q12. 저작권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A. 저작권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화상담(1800-5455)’이나 ‘법률 게시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Q13. 박물관과 계약하여 A 공간에서만 전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박물관은 추가적으로 B 공간에서도 전시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데, 별도로 허락이 필요할까요?

A. 저작물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범위와 조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박물관이 B 공간에서도 전시를 열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먼저 필요합니다.

Q14. 외주 업체에게 제작을 의뢰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양도받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A. 저작물을 이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필요하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겠다는 문구의 포함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을 말하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연극으로 제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Q15. 예술가분들의 홍보 및 유통, 외부 고객을 응대하는 CS 부문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예술작품을 공동 창작을 했다고 보고, 저작권료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저작권법상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했거나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부분만으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통 부분을 예로 하였을 때, 저작재산권을 가져오는 계약이 아니라면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후, 수익분배와 같은 계약 조건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서 창작적 표현 형식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을 경우,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를 하시고, 공동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협업하신 분의 동의하에,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16. 누군가가 작품의 제목을 똑같이 따라 한 경우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A. 판례에 따르면 제목이나 제호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목만 같다고 해서 저작권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Q17. 유명인, 연예인의 초상을 영상 작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또한, 소속사 측에서 계속된 수정을 요청할 것을 대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유명인, 연예인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계속된 수정요청이 우려되시는 부분이라면, 계약서상 수정 횟수를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또한, 활용하고자 하시는 매체 및 방법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Q18. 유명인, 연예인을 작품에 활용하고자 소속사와 ‘영상물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인격권을 바탕으로 수정 요청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먼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에서

3. 수익배분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¹⁾,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작권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9. 레퍼런스, 이야기, 콘티를 제공하고 의뢰하여 제작된 결과물을 디자이너 측에서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디자이너에게 귀속될 경우, 귀하가 저작자로부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더라도 저작권자가 제 3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다면, 이는 귀하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귀하가 직접 제 3자에게 권리 침해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신다면, 권리에 대한 양도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 어려울 경우, 계약 내용에 상대방 측의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추가하시는 방안이 있을 듯합니다.

Q20. 무료 음원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음원인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무료로 음원을 쓰기에 안전한 곳을 추천해 주세요!

A. 무료 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내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시어 음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21. 실연자의 연주를 영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연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양식을 참고하면 좋은가요?

A.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자료공간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표준계약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공연예술출연계약서 틀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계약서의 경우, 제작자와 실연자가 체결하는 계약인데, 계약의 목적이나 공연 개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요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참고하셔서, 연주하는 내용, 이용허락 기간, 대가지급,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연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다양한 저작권법상 권리가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용하시고자 하는 형태(결과물 형태, 업로드하는 곳)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이용 허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 기타